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는 고객님의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 ↳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신용거래융자 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 신용잔고율 10% 초과 등, 신용거래대주 예: 증권금융회사 대주물량 미보유 시, 증거금율 50%, 100%인 증권, 신용잔고율 10% 초

과 등)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 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 대비 20% 할인/할증된 가격**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상환기일 미상환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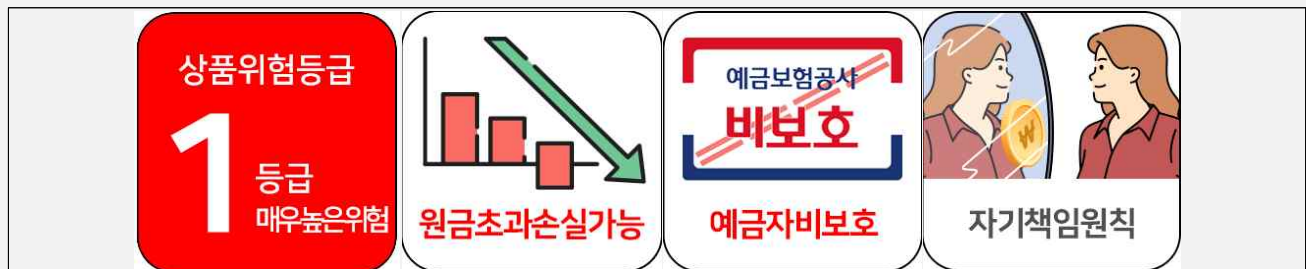
↳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용자기간 단위로 **신용거래용자는 A·B·C군- 횡수제한 없이 연장 가능**, D군은 만기연장 불가합니다. **신용거래대주는 A·B군- 총 기간 360일까지 연장 가능**(단, 만기일 43,2영업일 전에만 만기연장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기에 증권금융회사 대주물량 보유 시에만 연장 가능함, 또한 정상 신청된 경우 만기일 1영업일 전 처리결과 확인 가능함), C·D군은 만기연장 불가합니다.

↳ Q5. 신용거래 방식(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 신용거래용자는 재원에 따라 **회사의 자금으로 빌려주는 자기신용거래용자**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신용거래용자**가 있으며, 신용 매수 주문입력 후 '주문'창 및 '주식체결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신용거래용자의 재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도 전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유통신용거래대주**가 있습니다.

■ 쉽게 이해되는 위험 아이콘



※ 상기 아이콘은 상품의 주요위험을 나타낸 것으로 자세한 위험은 설명서 상 위험고지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연 "약정이자율 + 3%p"이며,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 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용자금 6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 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D일) 담보유지비율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신용거래 매수	10,000원	10,000,000원	167%	-
D일	8,300원	8,300,000원	138%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 미납 (30만원 담보부족)
D+2일	$309\text{주} = \frac{(6,000,000\text{원} \times 1.4) - 8,100\text{원} \times 1,000\text{주}}{(6,480\text{원} \times 1.4) - 8,100\text{원}}$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용자금

-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 대비 20% 하락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8,100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309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309주)이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216만원(309주×7,000원)으로 담보부족 금액(30만원)의 7.2배 수준**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중 **1번째로 위험성이 높은등급으로, 고수익지향형**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특히,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시려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위험 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 기준(집합투자증권 별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BB+ 이하 / 무등급 / A3-미만 장·단기채권 - BBB-이하 외화표시채권 - 원금비보장형 ELS(고난도_종목형) - 원금비보장형 DLS(레버리지) - 외화표시 ELS/DLS(고난도) - ELW, ETN, 신용거래, K-OTC, 해외주식, 파생상품ETF,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해외ETP 등 -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및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 BBB- / A3- 장·단기채권 - BBB+ ~ BBB0 외화표시채권 - 원금비보장형 ELS(고난도_지수형) - 원금비보장형 DLS(고난도) - 외화표시 ELS/DLS(원금 80%이상 부분지급형) - 국내주식, ETF(파생상품ETF 제외)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BBB+ ~ BBB0 / A3+ ~ A30 장·단기채권 - A+ ~ A- 외화표시채권 - ELS/DLS(원금 80%이상 부분지급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 A+ ~ A- / A2+ ~ A2- 장·단기채권 - A1 유동화증권 - AA+ ~ AA- 외화표시채권 - ELS/DLS(원금 90%이상 부분지급형) - 외화표시 ELS/DLS(원금 95%이상 부분지급형) - ELB/DLB(외화표시 원금지급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 AA+ ~ AA- / A1 장·단기채권(A1 유동화증권 제외) - AAA 외화표시채권 - ELS/DLS(원금 95%이상 부분지급형) - ELB/DLB(원금지급형) - 외화RP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AAA 회사채, 국공채 등 - 원화RP - CMA(RP형, MMW형)	예금 또는 저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의 각 위험등급은 메리츠증권 투자권유준칙 상 금융투자상품 별 투자위험도 및 투자자유형 분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및 절차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home.imeritz.com>),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3400)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신고(<https://www.fss.or.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 고객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로 **1인 1계좌로 약정** 가능함
(2022.01.03. 이전 당사 신용거래대주 약정고객이면서 매도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불필요)

나. 신용거래 대상 종목

신용거래용자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단,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중 당사가 신용거래용자 대상종목으로 지정한 A군, B군, C군 ※ 신용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A군: 증거금율 30% 종목, B군: 증거금율 40% 종목, C군: 증거금율 50% 종목, D군: 증거금율 100% 종목, 종목군은 현재가, 종목 대출가능여부 조회 등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거래대주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 대주 대상종목 확인 방법 : 신용대주 가능종목 조회 등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신용거래 보증금율

구분			보증금율
신용거래용자	기본형	A·B군	45% (현금&재매매)
		C군	50% (현금&재매매)
	투자형	A·B군	현금 25% + 대용 20% (대용은 대용가격이 존재하는 증권)
		C군	현금 30% + 대용 15% (대용은 대용가격이 존재하는 증권)
신용거래대주		A·B군	100% (현금), 재매매금액 사용불가

* 투자형의 경우 대용이 대용보증금율에 미달되더라도 현금으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결제일까지 출금(고)불가/담보용자불가/신규신용매수 주문은 불가합니다.

* 대용증권 평가기준 : 대용가격

라. 용자한도

☒ 고객별 한도

○ 총한도 20억원

- 신용거래용자: 총한도 20억원 (A·B·C군 20억원, D군 한도없음)
- 신용거래대주: 총한도 5억원 (A군 5억원, B군 3억원)

☒ **종목별 회사한도**

구분 종목군	종목별 발행주식수 대비 담보주식수	신용잔고율
A군	10%	10%
B군	8%	
C군	6%	
D군	-	-

*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개인공매도 사전의무교육 및 모의거래 각 1시간 이수한 고객에게 단계적으로 한도가 부여되며, 증권금융회사 대주 물량 보유 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횟수는 차입 매도 시 1회로 판단하며, 단계별 한도는 거래 체결일 다음 영업일에 반영됩니다.)

1단계) 거래등록일 이전 당사 신용거래대주 거래내역이 없는 최초 투자자: 3천만원

2단계) 2년내 5회 이상 & 5천만원 이상 신용거래대주경험: 7천만원

3단계) 2단계 충족 & 2년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고객별 한도 적용

* 회사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고객별 신용점수를 활용하여 531점 이상인 경우에 한도를 부여하며, 고객과 회사가 협의 시 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 기준에 의한 종목의 종목별 회사한도와 고객별 한도가 있으므로 고객별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종목의 회사전체 종목한도가 소진된다면 추가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담보유지비율

☒ **통합형 계좌 (신용거래용자, 신용거래대주 및 증권담보용자 가능)**

구분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용자	기본형·투자형	A·B군	140%
		C·D군	150%
신용거래대주		A·B군	120%

☒ **대주전용계좌 (신용거래대주만 가능)**

구분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대주	A·B군	105%

● 신용거래용자 약정 또는 증권담보용자 약정이 맺어져 있을 경우 대주전용 약정은 불가합니다.

●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A종목군 100만원, B종목군 50만원, C종목군 30만원 보유 계좌의 담보유지비율

$$\text{☞ } [(100\text{만원} \times 140\%) + (50\text{만원} \times 140\%) + (30\text{만원} \times 150\%)] / [100\text{만원} + 50\text{만원} + 30\text{만원}] = \mathbf{141.7\%}$$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바. 용자·대주 기간

☒ **신용거래 용자 : 90일**

☒ 신용거래 대주 : 90일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사.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 통합형 (신용거래용자, 신용거래대주 및 증권담보용자 가능)

140%~150% 미만(종목군별 차등)	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120% 미만 또는 신용거래대주만 보유 시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 대주전용 (신용거래대주만 가능)

105% 미만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	---------------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이자율 적용기준

구분	내용
신용 거래 용자 / 대주	(일반위탁계좌의 신용거래용자/대주, Super 365 계좌의 신용거래대주) 7일 이하: 연 5.90 % 2.95) 15일 이하: 연 7.55 % 4.60) 30일 이하: 연 8.05 % (기준금리 2.95 +가산금리 5.10) 60일 이하: 연 8.75 % 5.80) 90일 이하: 연 9.05 % 6.10) 90일 초과: 연 9.45 % 6.50) ※ 단, 신용거래대주는 당일 상환 시에도 1일치 이자를 징구합니다.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용자) 7일 이하: 연 5.90 % 2.95) 30일 이하: 연 6.90 % (기준금리 2.95 +가산금리 3.95) 30일 초과: 연 7.40 % 4.45)
	연 "약정이자율 + 3%p"이며,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 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연체이자 계산식] - 정기이자 미납 시: 이자미납금 X 연체이자율 X 연체일수 /365 - 미상환용자금 발생 시: 미상환용자금 X 연체이자율 X 연체일수 /365

* 계산기간: 보통년- 365일, 윤년- 366일

* 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2025.04.21>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며 이자율은 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기준금리: 전전월 1개월 평균 CD수익률 (CD수익률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② 가산금리: 리스크,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제반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 반영

* 시행일 신규 매수/매도체결분부터 적용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별로 비교 공시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용자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 고객은 수익기여도 등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이자 징수 순서: 회사는 이자를 징수함에 있어 고객계좌에 두 가지 이상의 신용공여(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 등)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징수합니다.
 - ① 신용공여 구분
 - 신용거래융자(자기→유통) → 신용거래대주 → 증권담보융자
 - ② 종목번호가 빠른 순
 - ③ 신용공여일자가 빠른 순

- ☑ **이자 징수일**
 - 정기: 매월 첫 영업일(전월분 이자 징수)
 - 수시: 상환일(매월 첫영업일부터 상환일(매매결제일, 현금/현물상환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징수)

- ☑ **이자율 적용방식**
 - **[소급법]으로 신용 매수/매도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일반 위탁계좌 신용거래융자금/대주매각대금 1천만원, 7.10~8.29, 용자기간 50일

계산방식	이자징수일	이자금액(원)	계산식	총이자(원)
소급법 (당사)	08/01 (정기이자)	46,315	$10,000,000 \times 8.05\% \times 21/365$	119,863
	08/29 (상환이자)	73,548	$(10,000,000 \times 8.75\% \times 50/365) - 46,315$	
체차법	08/01 (정기이자)	41,094	$(10,000,000 \times 5.90\% \times 7/365)$ $+ (10,000,000 \times 7.55\% \times 8/365)$ $+ (10,000,000 \times 8.05\% \times 6/365)$	108,888
	08/29 (상환이자)	67,794	$(10,000,000 \times 8.05\% \times 9/365)$ $+ (10,000,000 \times 8.75\% \times 20/365)$	

* 일자계산은 한편내기 방법으로 용자매수/대주매도 결제일 익일부터 현금/현물 상환일 또는 용자매도/대주매수 결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대주 이자율이 ~7일: 5.90%, ~15일: 7.55%, ~30일: 8.05%, ~60일: 8.75%이나,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5.90%, 7.55%, 8.05%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이자율인 8.75%만이 일괄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5.90%, 15일까지는 7.55%, 30일까지는 8.05%, 50일까지는 8.75%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예시2> 신용거래대주 매도 후 당일 매수상환 및 익일 매수상환 시

- D일 대주 매도: 수량 100주, 매도체결가 100,000원
- D일 상환 매수: 수량 50주, 매수체결가 130,000원
 - 이자 808원 [산식: $(50\text{주} \times 100,000\text{원}) \times 5.90\% \times 1 / 365$]
- D+1일 상환 매수: 수량 50주, 매수체결가 90,000원
 - 이자 808원 [산식: $(50\text{주} \times 100,000\text{원}) \times 5.90\% \times 1 / 365$]

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연 0.1% (소득세 14%, 주민세 1.4% 원천징수)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영업일 또는 상환일

차. 유통용자 담보활용 수수료

- ☑ 회사는 유통용자 제공시 증권금융회사에 매수한 신용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활용 동의 수량을 통보합니다. 증권금융회사는 담보수량 중 담보활용 동의 수량만 대여(대주포함) 등에 활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담보활용 수수료(기타소득)로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담보활용수수료 지급일 : 매월 세 번째 영업일
- ☑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 * 담보활용으로 발생한 담보활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2%)가 부과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일정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 ☑ 담보활용수수료 계산 예시

[산식 작성례]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예시 작성례]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담보활용주식수	지급수수료
A고객	100주	1,000원
B고객	200주	2,000원
C고객	300주	3,000원
합계		6,000원

②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 이자 외 발생비용은 신용주식 매매에 따른 매매수수료와 제세금으로 메리츠증권의 매매수수료 정책을 적용합니다.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율은 "홈페이지(<http://home.imeritz.com>) >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수수료/서비스 안내 > 매매수수료/세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신용거래용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 신용용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 및 M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오후 5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단, 현물 입고 처리는 오후 4시까지)
-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수량기준 상환)** 상환하고자 하는 수량이 기존 용자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용자금까지만 상환
 - **(전액기준 상환)** 현금상환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금액", 매도상환의 경우에는 "매도정산금액의 97%"를 용자금으로 상환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유현황(용자수량: A종목 1,000주, A종목 전일종가 14,000원, 용자금 1천만원, 예수금 0원),
 A종목 400주를 14,000원에 매도(매도대금 5,600,000원)했다는 가정
 * 용자이자, 거래비용 가정하지 않음

항목	수량기준 상환	전액기준 상환
매도상환 용자금	4,000,000원 = (400주 / 1,000주) X 1천만원	5,432,000원 = 5,600,000 X 97%
예수금	1,600,000원 = 매도대금(5.6백만원)-매도상환용자금(4백만원)	168,000원 =매도대금(5.6백만원)-매도상환용자금(5,432,000원)
담보비율	166.67% (용자주식평가금 8.4백만원+예수금1.6백만원) = ----- 용자금 6백만원	187.76% (용자주식평가금 8.4백만원+예수금 168,000원) = ----- 용자금 4,568,000원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용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단, 담보증권이 투자위험, 경고종목 지정 외의 다른 사유(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거래정지종목 지정)를 포함)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그 대용증권 지정 제외 사실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 > 주식 > 세부안내 > 대용가격)에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공된 담보증권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 및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대주전용계좌의 경우 부담보 평가는 담보 자산별 할인하여 평가합니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국내주식 평가방법

구분	신용거래용자, 주식담보용자	현금주식
거래정지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인 종목 → 한국거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인 종목 → 한국거

종목	래소 홈페이지의 대응가격 공시일 익일부터 '0'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대응가격이 '0'이 아닌 경우 → 최근일 증가로 평가	래소 홈페이지의 대응가격 공시일부터 '0'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대응가격이 '0'이 아닌 경우 → 최근일 증가로 평가
관리/정리매매	한국거래소 대응가격 '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응가격 공시일 익일부터 '0'으로 평가	한국거래소 대응가격 '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응가격 공시일부터 '0'으로 평가
투자위험/경고종목	최근일 증가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응가격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대응가격이 '0'인 경우

-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투자위험/경고종목,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정지된 종목, 기타 거래소가 대응가격을 '0'으로 정하는 경우

√ 대주전용계좌의 국내주식 평가방법

현금주식 (부담보증권)	할인율	비고
KOSPI200 주식 / ETF	88%	· 한국거래소 대응가격 '0'인 종목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응가격 공시일부터 '0'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대응가격이 '0'이 아닌 경우 → 최근일 증가에서 할인평가 · 대응가격이 0인 증권 중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당사가 증권담보용자 담보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 상장주식 / DR / ETN	68%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98%	
금융채	93%	
회사채	88%	
집합투자증권	70%	
파생결합증권/권리대용금	68%	
현금(원화)	100%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신용거래용자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을 적용함

* 전액상환방식 :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거래제비용 제외)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담보유지비율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text{주식처분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전일 종가)} \times \text{보유수량}}{(\text{매도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전일 종가)}}$$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 (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은 별도 고려하여 산정함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만기미상환금
매도가격**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 (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은 별도 고려하여 산정함

-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 신용거래대주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frac{[\text{대주매각대금} - (\text{매수가격**} \times X)]}{[\text{기준가격} \times (\text{보유수량} - X)]} = \text{담보유지비율}$$

$$\text{주식처분수량}[X] = \frac{\text{대주매각대금} - (\text{보유수량} \times \text{기준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text{매수가격**} - (\text{기준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매수가격 : 전일 종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 (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은 별도 고려하여 산정함

나. 만기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만기 미상환 수량 전체

-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유선, SMS(또는 알림톡) 및 이메일(고객 선택 시에 한함)로 통보하며, SMS(또는 알림톡) 와 이메일 통보를 모두 선택한 고객이 유선통보 제외 요청 시 유선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 (채무 충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약정이자율+3%, 실제공여기간과 관계 없이 연체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거래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 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용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 「**용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용자• 대주 기간 및 연장사항

- ☑ **신용거래용자** : 90 일
A•B•C군-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 D군- 만기 연장 불가
- ☑ **신용거래대주** : 90 일
A•B 군에 한하여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총 기간 360일 연장 가능
(단, 만기일 43,2영업일 전에만 만기연장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일자에는 연장처리 불가함, 해당 시기에 증권금융회사 대주물량 보유 시에만 연장 가능)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7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용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1,000÷400×100)임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상회하게 됨

<사례2>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 또는 한국거래소의 대용증권 지정 제외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합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공매도포지션 보고 및 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전증권사 보유잔고 합산기준임에 따라 개인고객인 경우 전 증권사의 종목별 순보유잔고(공매도현황)의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하나의 증권사에서 하나의 계좌를 선택 거래하여 보유정보를 집중하기를 권유드립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모집가액/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유상증자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하여 대주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 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체결일 기준으로 유상증자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 체결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
- ◎ (공매도 관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주권상장법인의 CB/BW의 발행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사채발행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하여 대주매도를 한 경우 CB/BW 취득이 제한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체결일 기준으로 사채발행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 체결한 경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CB/BW 취득이 허용됩니다.
- ◎ (권리관련 사항)
 -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 권리락 발생시 **권리대금의 추가납부(현금)가 발생**하며,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내 현금 미존재시 미수가 발생(연체료 부과)**됩니다.
 - 대주권리대금 산정 및 징수시기

권리	징수시기	권리대금 산정
현금배당	배당금 지급일	대주수량×주당배당금
주식배당	배당주식 상장일 익일	대주수량×배당신주 최초상장일 종가×(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유·무상증자	권리 기준일 익일	(최종매매일 구주 종가-권리락 기준가)×대주수량
유상감자소각대금/ 합병교부금/단주대금	대금 지급일	

- ◎ (주문관련 사항)
 - 주문방법: 영업점, 유선, HTS, MTS
 - 주문가능시장: 정규시장(시간외종가 및 시간외단일가 불가, 예약주문 불가)
 - 주문유형 : 지정가 (시장가/최유리/최우선/IOC/FOK 불가)

10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 ◎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약관 <별지>)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에 담보활용동의 철회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권금융이 발송한 위임장 및 증빙자료(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등)를 지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전자 투표는 불가)
- ◎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공개매수 일정이 발생한 경우 현금상환 후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내방), 우편/팩스+전화**(*우편이나 팩스 발송 후 그 사실을 회사에 전화로 알려야 함)의 방법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①원금, ②이자, ③부대비용(인지세)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없음
	반환 부대비용	인지세 (인지세 회사 부담분 반환)	없음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용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권의 설정 및 해지**
 -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는 주식 등에 회사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며, 고객과의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신용거래약정과 동시에 체결 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계좌별 잔고평가,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 등에 질권설정 내역을 표기합니다.
 - 추가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질권이 설정됩니다.
 - 신용거래용자금(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 포함) 전액 상환 시 질권은 자동 해지됩니다.

● 신용거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특수관계인
 2.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신용정보주체
 3. 법인
 4. 미성년자
 5. 외국인
 6. 미수채권계좌, 반송계좌, 예수금 은행보관방식인 은행개설계좌, 휴대폰미등록 계좌, 금융사기명의인 계좌
 7. 약관 內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신용정보주체
 2. 담보유지비율 미달 계좌
 3. 미상환계좌, 휴대폰 미등록 계좌, 금융사기 명의인 계좌
 4. 약관 內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항의 경우 신용공여한도 증액 및 만기연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신용정보주체
 2. 담보유지비율 미달 계좌
 3. 미상환계좌
 4. 이자미납계좌
 5. 반송계좌, 휴대폰 미등록 계좌, 금융사기 명의인 계좌
 6. 약관 內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계좌 자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관련 통지가 송달된 계좌

● 담보부족계좌 산정

1. 신용거래 및 증권담보용자 계좌 담보부족 산정시간
 -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 30분 경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¹ 시에는 담보부족회차(담보부족일수, 이하같음)를 증가, 담보충족² 시에는 담보부족회차를 클리어함

일자	시기	내용	비고
D일	오후 4시30분 경	담보부족계좌 선정작업	- 당일 신규 담보부족계좌: 담보부족회차를 1회차로 표기 * 원담보: 수량은 체결기준, 가격은 최근 증가로 평가 * 부담보: 수량은 체결기준, 가격은 최근 증가로 평가 * 현금: D+2일 예수금 기준 * 신용공여금: 체결기준
D+1일	오후 4시30분 경	담보부족계좌 선정작업	- 전일 담보부족계좌 대상 ① 연속 담보부족계좌: 담보부족회차를 2회차로 표기 ② 담보 충족계좌: 담보부족회차를 0회차로 표기 - 당일 신규 담보부족계좌: 담보부족회차를 1회차로 표기 * 원담보: 수량은 체결기준, 가격은 최근 증가로 평가 * 부담보: 수량은 체결기준, 가격은 최근 증가로 평가 * 현금: D+2일 예수금 기준 * 신용공여금: 체결기준

* 담보부족¹: 현담보비율³이 담보유지비율⁴을 하회하는 경우 (월 마지막 영업일 오후 4시30분경 이후의 담보부족금액은 익월 정기이자 및 연체료 포함)

- * 담보충족² : 현담보비율³이 담보유지비율⁴을 상회하는 경우
- * 현담보비율³: 계좌 내 실제담보가액의 비율
[(현금+원담보평가금+부담보평가금) / 총신용공여금 X 100]
- * 담보유지비율⁴: 신용공여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유지하도록 당사가 설정한 비율
[소요담보금⁵ / 총신용공여금액 X 100]
- * 소요담보금⁵: 신용공여금액 120~160% 이상에 상당하는, 고객에게 징구하여야 하는 금액
[총신용공여금액 X 담보유지비율]

2. 담보부족회차 클리어 작업: 실시간

(단, 반대매매 당일의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까지 입금·고 된 경우에만 반대매매 취소에 영향을 주며, 8시 30분 이후 입금·고된 경우 담보부족회차가 클리어 되더라도 반대매매는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① 입고 시

- 부담보평가 대상 유가증권 입고[현물입고, 타사대체 입고, 펀드입고(펀드이동, 상장수익증권대체, 양도양수시의 양수 등), 당사 대체입고 등]시 입고 시점에 담보평가하여 담보충족시에는 담보부족회차를 클리어함

② 입금 시

- 입금[창구입금, 은행이체, ATM입금, 당사대체입금, 권리대금 입금, 예탁금이용료 등] 시 입금 시점에 담보평가하여 담보충족시에는 담보부족회차를 클리어함

③ 현금 상환 시

- 현금상환 처리 시 상환처리 시점에 담보평가하여 담보충족시에는 담보부족회차를 클리어함

④ 매도상환 시

- 매도상환 처리 시 상환처리 시점(체결기준)에 담보평가하여 담보충족시에는 담보부족회차를 클리어함

⑤ 임의상환 시

- 반대매매 주문이 모두 체결되는 시점에 담보평가하여 담보충족시에는 담보부족회차를 클리어함
- 반대매매에도 불구하고 해당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담보평가지 담보충족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부족회차는 1회차부터 다시 시작함

● 반대매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계좌에 두 가지 이상의 신용공여(신용거래용자, 증권담보용자 등)가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계좌에서 담보부족으로 인한 처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상환

2. 신용공여잔고 임의처분 순서

- ① 신용공여일자 오래된 순
- ② 동일 신용공여일자 시 신용거래용자 → 증권담보용자 → 신용거래대주
- ③ 동일 신용구분 시, 종목번호 빠른 순

3. 그 밖의 증권

- 주식 → 수익증권 → ELS → 채권

● 신용정보평가정보관련 유의사항

- 고객은 신용공여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신용공여한도, 담보유지비율, 신용 기본형의 보증금율, 선물옵션 매매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공여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피콜 제도

- 해피콜 제도란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해피콜 방식은 유선으로 시행되며, 금융투자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5영업일) 동안 해피콜 무응답시 자동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해피콜 무응답(5영업일)으로 인하여 해피콜이 자동 종결된 경우 회사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D수익률 설명서]

◆ **CD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입니다.

I.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27)**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④ 및 감독규정 §13)

II.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Ⅲ.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1)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행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행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Ⅳ.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2)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VI.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6) 산출업무의 he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비상사태로 중단되는 경우 본 약정상 기준금리를 아래표의 **대체기준금리로 대체하기로 하며, CD수익률 산출중단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기간부터 대체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CD수익률 산출중단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해소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기간부터 기존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CD 수익률 산출중단이 발생한 경우 또는 CD수익률 산출중단이 해소되는 경우, 본 약정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순 번	대체기준금리	선정 근거
1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삼(3)개월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민간채권평가회사 5개사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단순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2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삼(3)개월인 금융채 I(은행채)에 대한 민간채권평가회사 5개사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단순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에서 CD수익률산출중단일의 치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CD수익률과의 과거 1년 평균 스프레드(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를 합산한 금리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3	회사와 고객 사이에 합의된 별도 금리	회사와 고객 간 합의

※ CD수익률 산출 중단시 위에 표에 기재된 대체기준금리 적용하며, 앞선 순번의 대체기준금리가 관련 기관에서 적절하게 산출·공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번의 대체기준금리 적용

VIII. 기타

- CD수익률 설명서 변경절차는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1조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CD수익률 설명서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	주요 변경사항
제정	2023.09.15	• CD수익률 설명서 최초 제정
개정	2024.03.29	• 비상계획 관련 문구 및 금융소비자 확인란 문구 수정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총괄팀**(02-6454-498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home.imeritz.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설명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리테일지원팀	차장	맹재희	jaehee.maeng@meritz.co.kr
리테일지원팀	대리	김수진	sujinjin@meritz.co.kr

(내점 및 유선용) 설명직원 확인란_전자서명은 뒷페이지 참조

메리츠증권 ()팀/센터 ()는 상기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에게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상품의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합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과 직원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 (서명 / 인)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신용공여	- 증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금전의 용자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뜻함. - 신용거래(용자/대주), 증권담보(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용자,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 보증금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용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용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시 용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용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용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7일까지</td><td>7%</td><td>~30일까지</td><td>8%</td><td>~90일까지</td><td>10%</td></tr><tr><td>이자기산일 (9.4)</td><td>7일 경과 (9.11)</td><td>30일 경과 (10.3)</td><td>50일 경과 (10.24)</td><td colspan="2"></td></tr><tr><td colspan="5"></td><td>총 이자 = 684,932원</td></tr></table>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684,932원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684,932원														
체차법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7일까지</td><td>7%</td><td>~30일까지</td><td>8%</td><td>~90일까지</td><td>10%</td></tr><tr><td>이자기산일 (9.4)</td><td>7일 경과 (9.11)</td><td>30일 경과 (10.3)</td><td>50일 경과 (10.24)</td><td colspan="2"></td></tr><tr><td colspan="5"></td><td>총 이자 = 593,151원</td></tr></table>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593,151원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593,151원														
단일법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이자기산일 (9.4)</td><td>7일 경과 (9.11)</td><td>30일 경과 (10.3)</td><td>50일 경과 (10.24)</td></tr><tr><td colspan="4"> 단일 이자율인 7% 적용 </td><td> 총 이자 = 479,452원 </td></tr></table>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단일 이자율인 7% 적용				총 이자 = 479,452원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단일 이자율인 7% 적용				총 이자 = 479,452원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유통대주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									

※ 소급법, 체차법,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는 신용거래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10.24)을 가정하여 산출함